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KOREAN POWER PLANT INDUSTRY UNION (KPIU)

우 135-50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9-6 대동빌딩 5층 http://baljeon.nodong.net FAX 021-8159
조직쟁의실장 정현수 ☎ 02-3456-8158(사선 021-8158) mcgiber@empal.com

문서번호 발전노조 0811- 249호 2008.11.20.

수 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산하 본(지)부 위원장

참 조 조직국(부)장/ 사무(국)장

제 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4호 하달에 따른 세부지침

1. 노조탄압 분쇄! 임·단투 승리! 구조조정 분쇄!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에 여념이 없으신 동지들께 뜨거운 동지애를 전합니다.

2. 제30차 중앙위원회 및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의에 의거 투쟁명령 4호 하달에 따른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3. 특히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은 조합원이 잘 보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별도발송-이메일)

1.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4호. 1부.
2.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4호에 따른 세부지침 1부. 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박 노 훈



08년 7대 요구 쟁취 투쟁!! 승리!!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4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합니다.

1. 전지부는 **11월24일부로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상황실**을 설치한다.
2. 전지부는 **11월24일부로 준법투쟁 및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3. 전조합원은 **현장순회 간담회**에 적극 결집한다.
4. 전지부는 **11월24일까지 분임조 편성**을 완료한다.

※세부지침은 공문참조(발전노조 0811- 249호)

2008. 11. 20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박 노 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은 조합원이 잘 보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게시하기 바랍니다.

붙임 - 2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4호 하달에 따른 세부지침

1. 11월 24일부 전지부 ‘쟁의대책위원회 전환 및 상황실’ 설치 건

가. 지부쟁의대책위원회 구성

- 지부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1차 지부쟁의대책위원회 회의(2008.11.24)시 완료하여 중앙상황실에 보고한다.

※ 참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운영 및 구성(2008.11.10 구성완료)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운영 및 구성

▶▶▶ 경과, 기능, 소집, 의결 및 기금사용

1. 경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전환결의(->제30차 중앙위원회)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 : 중앙집행위원 전원(->제30차 중앙위원회)

<쟁의대책위원회는 08 임·단협 체결시까지 운영>

2. 기능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기타

3. 중앙쟁대위원장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겸임(본부 및 지부는 이를 준용)

4. 회의소집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거나 대책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본부 및 지부는 이를 준용)

5. 의결

투쟁방침 등 중요결정은 중앙대책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동의를 의결을 거쳐서 집행

6. 기금

쟁의발생 시 발생하는 재정은 투쟁기금으로 한다.(단, 쟁의발생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 투쟁기금 사용은 중앙쟁의대책위에서 의결)

▶▶▶ 쟁의대책위원회 권한 및 의무

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투쟁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쟁 방향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 상황실

- 가. 상황실장은 **수석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팀장으로 구성
- 나. 쟁의대책위의 모든 사업집행을 총괄하며 전체 투쟁 상황을 점검·통제
- 다. 각 사업의 유기적인 결합과 역할분담 및 점검
- 라. 투쟁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의 생산 및 하달
- 마. 회의진행, 재정, 물품 등에 대한 지원
- 바. 쟁의대책위에서 진행하는 전체 투쟁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지원

■ 총무/재정팀

- 가. 팀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총무실장 및 기타 필요인원으로 구성
- 나. 회의진행, 재정, 물품 등에 대한 지원

■ 정책기획/교섭팀

- 가. 팀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정책기획실장 및 기타 필요인원으로 구성
- 나. 투쟁방침 및 계획의 수립과 전체일정 조절, 투쟁논리의 개발과 적극적 대응
- 다. 단체교섭의 실무 및 내용적인 지원
- 라. 대정부 상층교섭

■ 조직/쟁의팀

- 가. 팀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조직쟁의실장 및 기타 필요인원으로 구성
- 나. 전 조합원에 대한 조직관리와 비상연락망 조직 및 운영
- 다. 투쟁시기 조합 실천단의 구성 및 운영
- 라. 투쟁에 필요한 쟁의 및 문화사업 일체
- 마.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및 직종과 유기적인 결합

■ 교육선전/홍보팀

- 가. 팀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교육선전실장 및 기타 필요인원으로 구성
- 나. 대 언론사업, 여론전 담당
- 다. 조합의 투쟁 상황 홍보와 대국민 홍보물 제작, 배포
- 라.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투쟁을 조직

■ **대협/법률팀**

- 가. 팀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대외협력실장 및 기타 필요인원으로 구성
- 나. 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한 투쟁전술의 완급 조절
- 다. 연대사업

② **본부쟁의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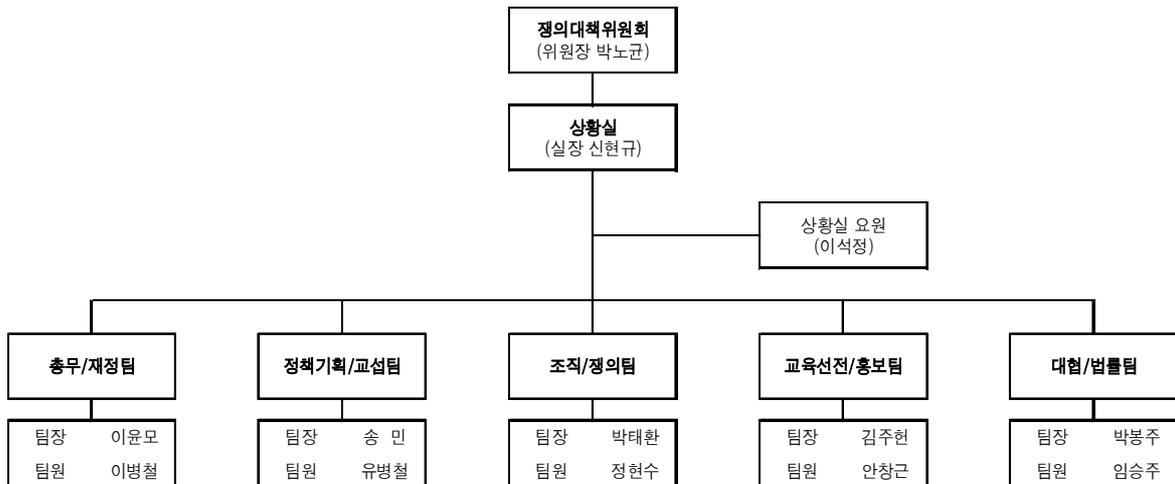
중앙쟁의대책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③ **지부쟁의대책위원회**

1.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모든 집행부서를 조직과 선전으로 집중
2. 전체 조합원에 대해 실천단 등을 포함한 분임조 편성
3. 비상연락망 편성 및 투쟁명령에 따른 일사분란한 행동 조직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간담회 등)는 매주 월요일 14시에 개최한다.

▶▶▶ **구성**



나. 상황실 설치

1) 설치 목적

- 투쟁 거점으로서의 역할 담당
-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에 따른 투쟁 세부 지침 수립·이행
- 일사 분란한 조직체계로 운영

2) 설치 기간

- 중앙 상황실 : 2008. 11. 24(월) ~ 12. 05(금)
- 지부 상황실 : 2008. 11. 24(월) ~ 12. 05(금)

3) 설치 방법

- 중앙, 지부별 설치
- 설치 장소
 - 중앙상황실 : 중앙사무실(중앙, 5개 본부)
 - 지부상황실 : 전 지부 사무실

4) 운영 시간

- ▶ 11월 24일 ~ 12월 05일
 - 중앙 상황실 근무 시간 : 09:00 ~ 21:00
(☎ 021-8158/ 팩스 021-8159)
 - 지부 상황실 근무 시간 : 09:00 ~ 20:00
 - 담당자 순번을 정한 뒤 상황실 운영

5) 상황 보고 및 일지 작성

- 상황 보고 : 양식에 의거하여 매일 20시 까지(필히 E-Mail 보고)
- 지부(상황실장) → 중앙(상황실장) baljeon@baljeon.nodong.net

6) 상황실 근무 수칙

- ▶ 항상 긴장감을 갖고 사측의 동향을 파악 한다.
- ▶ 상황실 출입통제 철저(회사 간부)
- ▶ 상황실내 술 반입금지
- ▶ 보고 철저(상시 보고 체계 확립)
- ▶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겸하며 사진 및 증거(녹취) 확보 후 중앙상황실 신고센터로 접수

7) 상황실 임무

- ▶ 지부 투쟁 지도 및 지침 이행 점검
- ▶ 상시적인 대 조합원 상황 공유 및 지부 상황 공유

- ▶사측 동향 파악 및 구조조정 현장 대응 지도 및 점검
- ▶긴급 상황 대비 24시간 유·무선 대기
- ▶조합원과 함께하는 상황실 프로그램 수립 및 실천
- ▶노동가요 및 율동 강사 양성(지부별 1인)
- ▶기타 투쟁 승리에 필요한 정책 및 전략 수립

8) 상황실 회의

- ▶각급쟁의대책위원장이 소집하고 해산한다.
- ▶지부상황실장은 상황실 회의 결과를 중앙상황실로 보고한다.
- ▶상황실장은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시 각 팀별(중앙/지부) 상황 보고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 시 보고한다.
- ▶상황실장은 중앙상황을 총괄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기타 필요한 정책, 투쟁계획 등을 수립·시행한다.

양식)

상.황.일.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발전본부 ○○○○지부			
작성일자	2008. . .()	작성자	
조합원수			
활동내용			
투쟁지침 이행여부			
사측동향 (세부행사 포함)			
명일계획			
특기(건의)사항			

2. 11월 24일부 전지부 ‘준법투쟁 및 철야농성’ 돌입 건

가. 준법투쟁

○ 준법투쟁 기간

- 2008년 11월24 ~ 12월05일

○ 조직 동원

- 동원 대상 : 전 조합원

○ 준법투쟁의 필요성

- 조합원 스스로가 투쟁의 주체로 선다.
- 현장 투쟁을 촉발함으로 인해 투쟁력을 만들고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한다.
- 사측탄압의 경중을 보면서 파업돌입 시 탄압에 대한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 매일 투쟁을 중앙으로 총화함으로써 파업시기 소통체계에 대한 예비훈련을 한다.

○ 준법투쟁 방법

- 준법투쟁 기간동안 정시 퇴근(18:00, 시간외 근무 거부)
- 특히 11월26일(수), 12월03일(수)은 퇴근집회 실시(인원, 사진 등 홈페이지 등재)
-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 대응 철저
 - ※ 중앙, 지부 고발센터(상황실) 운영(조합원→지부쟁대위→중앙쟁대위)

▶▶▶준법투쟁을 사수하기 위하여...

- 분임조별로 준법투쟁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토론한다.
- 분임조별로 출·퇴근하며 중앙상황실 지침 및 상황을 공유한다.

나. 철야농성

○ 철야농성 기간

- 준법투쟁 기간과 동일

○ 철야농성 장소

- 상황실

○ **철야농성 시간**

- ▶ 11월 24일 ~ 12월 05일
- 중앙 근무 시간 : 18:00 ~ 21:00
- 지부 근무 시간 : 18:00 ~ 20:00

○ **철야농성 방법**

- 간담회 실시 : 교대근무(1조, 1block), 또는 통상근무(부서별)
- 간담회 내용 : 쟁대위 소식, 토론, 부당노동행위 발굴 및 전파, 기타
- 필히 전조합원이 한번이상 농성장 참여
- 필요시 중앙쟁대위(상황실)에서 세부프로그램 전달예정

○ **상황 보고 및 일지 작성**

- **상황 보고 : 양식에 의거하여 매일 20시 까지(필히 E-Mail보고)**
- 지부(상황실장) → 중앙(상황실장) baljeon@baljeon.nodong.net

3. '현장순회 간담회' 일정 건

1.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쟁대위 1차회의		출근선전전 단협실무	남부분부주관 교대근무 1차 결의대회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권역별 지부장(조합간부 포함) 토론회	중노위(필수유지) 사전조사 임금실무	중식집회(본사) 쟁대위 2차회의 투쟁복 착용	동서본부주관 교대근무 2차 결의대회	대표교섭(예정)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준법투쟁 철야농성돌입 쟁대위 간담회	단협실무	출근선전전	남동본부주관 교대근무 3차 결의대회 조합간부 선도투쟁	조합간부 선도투쟁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쟁대위 3차회의 (예정)		중식집회	서부분부주관 교대근무 4차 결의대회			

2. 간담회 계획

가. 강 사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5개 본부장

나. 기 간 : 11/24(월) ~ 12/05(금)

다. 대 상 및 장소

- 통상근무 : 강당(단체협약에 의거 시간확보 - 2H)

- 교대근무 : 각 중앙제어실

라. 강사는 사전에 해당지부와 협의하여 순회시행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남동본부장	중부분부장	동서본부장	서부분부장	남부분부장
삼천포	제주	서울	하동	보령	당진	태안
평택	남제주	분당	서천	영월	군산	부산
울산	한림	청평	여수	영동	산청	삼랑진
영남	본사	일산	호남	동해	무주	청송
도서		인천	양양	영흥	예천	교육원
		서인천				
		신인천				

4. 분임조 편성 건

○ 편성방법

- 소대는 4~5명으로 편성한다.(소대장 지명)
- 지대는 부서별로 편성한다.(지대장 지명)
- 이름, 소속과 손전화를 필히 기록한다.
- 지부상황실은 조합간부로 구성한다.

○ 편성기한

- 2008년 11월24일까지 편성하여 중앙쟁대위에 보고
- 지부(상황실장) → 중앙(상황실장) baljeon@baljeon.nodong.net

※ 편성양식

○○지부상황실			
직책	성명	소속	손전화
지부장	○○○	○○○	011-○○○○-○○○○
사무장			

1지대 1소대(○○○부)			
직책	성명	소속	손전화
1지대장	○○○	○○○	011-○○○○-○○○○
1소대장			
소대원			
소대원			
2소대장			
소대원			
소대원			

〈참고〉

투쟁복 착용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투쟁복 착용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투쟁복 착용은 쟁의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즉,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과시하거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투쟁복을 착용하였다면 이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법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법적 판단이 이와 같음에도 만약 발전회사와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의 투쟁복 착용을 방해한다면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동시에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투쟁복을 착용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방해행위나 위협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는 것은 법적 판단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발전회사나 관리자들이 **투쟁복 착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그 즉시 중앙쟁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쟁대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모든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끝까지 응징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중앙쟁의대책위원회